



4단계 BK21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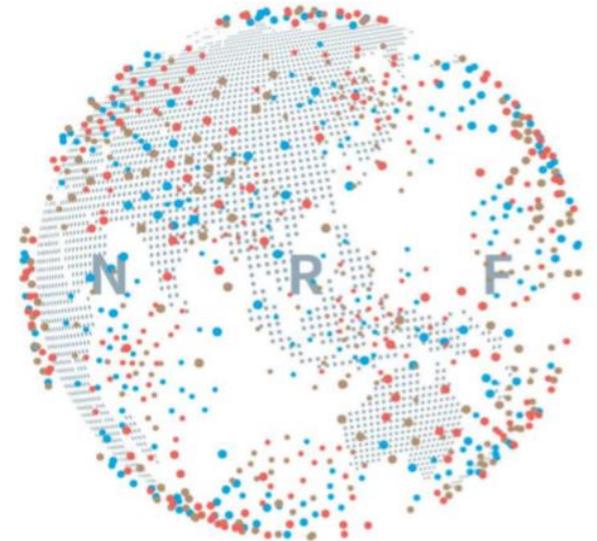
교육연구단(팀) 행정 사항 및
사업 관련 주요 Q&A 안내

2023.2.



목 차

- 1 교육연구단(팀) 행정 사항
- 2 사업 관련 주요 Q&A 안내(참여인력, 사업비 등)



필수 추진 행정 업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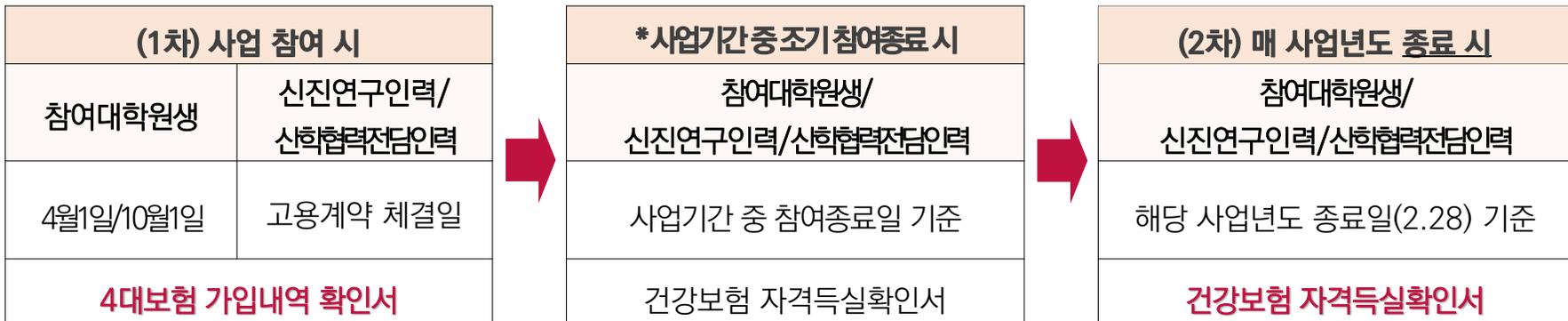


참여인력 자격요건 검증 자료 구비 필요

- ☑ (참여대학원생)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함(지침 제11조 8항)
- ☑ (신진연구인력)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음(지침 제14조 5항)

☑ 자격요건 검증 대상 :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 자격요건 검증 방법



🎯 필수 추진 행정 업무 (2)



✓ 1년에 2번 학기별로 참여인력 입력

- ❖ 교육연구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지침 제57조)

✓ 입력 대상 : 4단계 BK21 사업 2023년도 사업 협약 체결 교육연구단(팀)

✓ 입력 기간 : 학기 초 (1학기: 4월 중순/ 2학기: 10월 중순) *참여인력 자격요건 검증 이후 입력 필요

✓ 입력 사이트 : 4단계 BK21 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https://bk21four.nrf.re.kr/bkms>)

✓ 입력 요청 사항

- 1) 참여대학원생 관련 정보 : 인적사항, 연구장학금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 등을 포함한 정보 일체
- 2)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정보 : 인적사항,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 등을 포함한 정보 일체

※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관 증빙자료로 구비 필수

🎯 참조 : 참여인력 KRI 등록 관련



✓ 1년에 2번 학기별로 참여인력 입력

- 교육연구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지침 제57조)

✓ 참여인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시 참조사항

- 참여인력은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s://www.kri.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연구자등록번호를 생성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정보 입력 시 해당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입력
-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IRIS)에서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았으나, 한국연구자정보(KRI)에 미가입한 경우, 시스템에서 참여인력 조회 불가
 - 해당 참여인력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s://www.kri.go.kr>) 가입 완료 후 참여인력 정보 입력
- COVID-19로 인해 미입국한 학생의 경우도 참여자격요건 충족 시 BK21 사업 참여 및 지원 가능
 - 시스템에 임시 국가연구자번호로 등록 후 입국시 추후 재등록을 통해 수정
- 참여인력 정보 입력(4월/10월) 이후, 수정 및 변경 필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에서 수시 수정 가능

🎯 필수 추진 행정 업무 (3)



✓ 참여인력 서약서 작성 및 보관

-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별표6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보관하여야 한다.(지침 제30조)

- ✓ 작성 대상 :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
- ✓ 작성 시기 : 4단계 BK21 참여시점 최초 1회
- ✓ 작성 양식 : 지침 별표[6]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양식
- ✓ 참고 사항
 - 참여인력서약서는 원본 보관증빙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스캔본 구비가능
- ✓ 주요사항
 - 참여인력은 2021년 6월 11일 개정된 양식의 서약서를 작성 및 구비하여야 함 ※ 지침개정 이전 서약서 작성자는 변경된 서약서로 재작성 필수

🎯 필수 추진 행정 업무 (4)



✓ 4단계 BK21 사업 우수인력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웹진 게재용 성과 제출 등

• 교육연구단의 장 권한과 책임 중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지침 제 8조)

✓ 우수인력 포상 대상자 추천

- 포상 훈격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2023.11월~12월 중 공고 예정)
- 대상 : 4단계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중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촉망되는 자

✓ 웹진 게재용 성과 제출(희망 교육연구단(팀)에 한함)

- 사업 웹진 게재일 : 분기별 게재 (3월/ 6월/ 9월/ 12월)
- 성과 조사 방법 : 홈페이지(<https://bk21four.nrf.re.kr>) 공지사항에 성과 제출 요청 안내 글 탑재
- 제출 가능 성과 : 교육연구단(팀) 우수 성과(논문, 특허, 기술이전, 학술대회 발표, 수상 등)

✓ 우수성과 공유

- 홈페이지 성과공유 게시판에 우수성과 사례 소개글 작성 및 공유(항시 작성가능)
- 제출 가능 성과 : 연구 성과, 대외 수상, 공식행사, 웹진, 뉴스레터, 홍보, 그 외 우수사례 등

🎯 필수 추진 행정 업무 (5)



✓ 재단 및 국회 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 (상시)

- 자료 제출 등을 요구 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함.(지침 제25조)

- ✓ 국회 국정감사 관련 요구자료 (9~10월 중)
- ✓ 전임교수 담당 강좌 현황 조사 (11월~12월 중)
- ✓ 대학원생 취업현황 및 행정전담인력 고용 현황 조사 (12월~1월 중)
- ✓ 이 외 사업 관리·운영 관련 요청자료 (상시)



✓ 사업비집행신고센터 운영

-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함.(지침 제 6조)

- ✓ 주요사항: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 절차에 대한 공지 필요

* 재단 감사시스템 참고: 재단 감사실 핫라인(신고센터) (<https://www.nrf.re.kr/report/hotline>)

🎯 필수 추진 행정 업무 (6)



성과입력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위한 4단계 BK21사업 성과 자료 입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 ✓ 성과 입력 대상 : 4단계 BK21 사업 수행 교육연구단(팀)
- ✓ 성과 입력 내용 및 입력 기간 : 교육연구단(팀) 과제 기본정보, 성과 정보 및 증빙파일/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간의 실적)
- ✓ 성과 입력 기간 : 매년 12월 ~ 1월 중, 4단계 BK21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https://bk21four.nrf.re.kr/bkms>) 입력



자체평가

✓ 당해연도 사업기간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재단 제출

-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교육연구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지침 제18조)

- ✓ 평가 기간 : 매년 9월 1일 ~ 다음 차년도 8월 31일(1년간)
- ✓ 평가 시기 : 매년 9 ~ 10월 중 *예시) 2022.9.1 ~ 2023.8.31 (1년간) 실적에 한하여 '23년 9~10월 중 자체평가 실시*
- ✓ 평가 방법 : 구체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자율에 맡기되, 교육연구단(팀)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권장
- 국내·외 주요 평가인증기관 또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평가단에 의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 자체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2분기 중 별도 안내 예정

🎯 RNDCARD시스템 대체 시스템 개발

- ✓ **추진목적** RNDCARD시스템 종료로 인한 교육연구단(팀)의 정산 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 개발
- ✓ **적용방법** 4단계 BK21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 **사용대상** 4단계 BK21사업 수행 교육연구단(팀) 전체
- ✓ **사용시기** 2023.3월 이후(연구정산팀 별도 안내 예정)



- ✓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 완료 요청 (RNDCARD시스템 운영 종료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구축 중)**
- ✓ 3차년도(2022.3.1~2023.2.28) 사업비 이월 가능 비율(15% 이내) 적용
- ✓ 연차 종료 후 정산 관련 절차 및 안내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에서 진행 (사업비 정산 관련 문의 번호 : 042-869-7788)

1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참여인력)



✓ (참여대학원생) BK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가능한지?

참여대학원생이 기본적인 참여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참여요건 충족에 대한 교육연구단 (팀)장 확인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대학원생) 주말에 생계형 단기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참여가 가능한지?

참여대학원생이 주말에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근로 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로시간이 주말이라 하더라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1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참여인력)



Q3

- ✓ (참여교수) 교수 임용 예정자가 임용 직후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려는데, 임용예정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지?

참여교수 신규 등록 시 임용예정 관련 서류로는 증빙이 불가합니다. 또한 참여교수 등록 및 변경은 사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신규 임용 교수는 임용 및 교육연구단 참여 후 재직증명서, 임용 관련 공문 등을 첨부해서 신규 등록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4

- ✓ (참여교수) 교육연구단(팀)의 참여교수 인원이 한 학기에 시차를 두고 2명이 퇴직(4월1일 1명, 6월 15일 1명)했다면 총원 기한 6개월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참여교수 개인에 대해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4월 1일 퇴직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6월 15일 퇴직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총원이 완료되어야 하며, 10월 2일 이후 2명을 동시에 총원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1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참여인력)



- ✓ (신진연구인력) 시간강의 관련 규정은 학기 당 6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정규학과와 계절학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또한 학점 확인이 제한된다면 담당할 수 없는 것인지?

신진연구인력의 6학점 기준은 한 학기이며, 정규학과와 계절학과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학점 확인이 제한되는 강좌, 초등/중등/고등학교 교과목 등은 담당이 제한됩니다.



- ✓ (신진연구인력) 대학 내 다른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한지?

신진연구인력도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사전 승인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대학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고용계약을 맺고 인건비를 수령하면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2 사업비 예산 편성 기준(교육연구단(팀))

항목	미래인재 양성사업			혁신인재 양성사업		사업비 편성내용	
	기초과학/응용과학/ 중점응용	인문사회	교육연구팀	신산업 분야	산업·사회문제 해결 분야		
국고 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	1.대학원생연구장학금 ※ 교육연구단(팀) 유형별 편성 비율은 4단계 BK21사업 기본계획 기준, 수정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개정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60%이상 ※ 의·치·한 의 학 분야 50%이상	50%이상	50%이상	60%이상	50%이상	·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수정 기본계획 기준) -석사과정: 월 100만원 이상 -박사과정: 월 160만원 이상 -박사수료: 월 130만원 이상
	2.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비율제한 없음				· 월 300만원 이상	
	3.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4.교육과정개발비						
	5.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6.국제화경비						
	7.교육연구단 운영비					10%이내 또는 5,000만원 이내 ※단, 위의 연구장학금 지급비율은 준수하여야 함	
	8.간접비	5%이내					

2 사업비 예산 편성 기준(대학원혁신)

구분	집행 기준	비 고	편성비중
1. 인건비	○ 대학원 혁신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 인건비	- 퇴직금, 4대보험 포함 - 신규 채용 인력에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 관련 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하지 않음	20%이내
	○ 보조 인력(기술 인력, 심리·진로 상담가, 교육·연구 지원 인력 등) ※ 기술 인력(Technician), 심리·진로 상담가, 교육·연구 지원 인력 등	- 보조 인력의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며, 대학별 채용 계획 및 기준 마련	
2. 국제화 경비	○ 대학원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 및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등	- 개별 학과(부) 또는 BK21 교육연구단(팀)의 국제화 경비로 집행 불가 - 해외학자 초빙·활용 경비는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	60% 이상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대학원 공통 교과(Core Curriculum), BK21 교육연구단(팀) 관련 교육과정, 산학 협력 활성화, 산업·사회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 연구 평가·지원 체계 구축비, 연구윤리·안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 미참여 학과(부) 직접 지원 불가	
	○ 대학원생 RA/TA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대학원생 펠로우십(need/merit based)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학문후속세대 및 신입교원의 교육·연구 역량 증진 비용 등 ※ 대학원생 논문작성법·외국어 교육, 학업 지원(Academic Advising) 비용 ※ 대학원생 심리상담, 권익 강화, 지역사회 참여·교류 촉진 프로그램 운영비 ※ 신입교원 강의 역량 개발 및 대학원생 연구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	- BK21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부)의 대학원생이 아니더라도,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과 연관된 TA 및 RA 대학원생에 한해 지원 가능 - 미참여 학과(부) 직접 지원 불가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시설비)	○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비용 ※ 대학원생 취·창업지원센터, 경력개발센터 등 ○ 공용 연구 공간 환경 개선 비용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 (캠퍼스 조정, 보도블럭 교체, 조경, 광장 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집행 불가 - 미참여 학과(부) 직접 지원 불가	20%이내
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범용성 높은 기자재 및 연구 재료비 구입·임차 비용	- 미참여 학과(부) 직접 지원 불가	-
6. 기타사업운영비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항목 ※ 국내여비, 도서 구입비, 일반 수용비, 각종 행사 경비 등		5%이내

3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교육연구단(팀) 사업비)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참여대학원생이 BK사업 참여기간 중 취업 또는 졸업으로 인해 참여가 종료된 경우 참여 기간에 대해 기여도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지?

참여가 종료된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참여한 기간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연구장학금 비목에서 집행가능(단, 참여종료한 대학원생에 대해 차년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

※ 교육연구단(팀) 자체운영규정 인센티브 지급기준 준용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신진연구인력에게도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 신진연구인력의 참여가 종료된 뒤에도 참여기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지급 사항이 근로계약서 및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에 명시된 경우 참여기간 내 지급 가능 (단,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신진연구인력에게 종전 계약기간 중 우수한 성과도출 등을 사유로 소급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3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교육연구단(팀) 사업비)

✓ **(교육과정개발비) 교육과정개발 시 정책과제나 용역형태로 진행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별도의 관리기준이 있는지?**



정책과제나 용역 형태로 교육과정개발을 별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 대학 내의 정책연구과제 관리기준에 따라 진행

대학 내 정책연구과제 관리기준에 따라, 협약서 없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 승인만 받고 진행 가능하다면 별도의 협약 체결 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대학 내에서 별도로 마련한 정책연구과제 관리기준 준용

✓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해당 교육연구단은 컴퓨터공학과로서 영상처리, 딥러닝, AR 등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CPU나 RAM같은 PC부품도 재료비로 구입이 가능한지?**



CPU나 RAM 같은 PC 부품이 BK사업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연구실험의 직접재료(직접 분해 및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로 활용된다면,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 소모성 재료비로 집행 가능

연구수행을 위하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용 장비 및 범용성 기기 구입비, 유지보수 및 수리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는 집행 불가

3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교육연구단(팀) 사업비)

✓ **(국제화경비)해외 단기연수 시 참여대학원생 없이 참여교수님과 신진연구인력이 동행해서 관련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해외 단기연수에는 ①국제학회, ②기관연수가 있음

① 국제학회 : 국제학회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참석은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or 신진연구인력 or 산학협력전담인력에게 지원 가능(학회등록비, 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 등). 단, 참여교수는 학회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지도학생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동반 참석 가능하며 단독 지원 불가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8조 ③항 3호

② 기관연수 : 대상기관과 MOU체결 또는 공식초청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게 지원 가능하며 (항공료, 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등) 참여교수는 연수대상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동반 지원 가능하며 단독 지원 불가



✓ **(국제화경비)해외석학 초빙 시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 대상인데, 주 소속이 해외 대학이고 국내대학을 겸임하는 교원도 초빙 대상인지?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을 충족하면 한국 국적이라도 가능한지?**

해외대학이 원소속이며 국내대학을 겸임하는 교원도 초빙 대상에 해당됩니다. 한국 국적인 사람이라도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인 교수 또는 연구원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3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교육연구단(팀) 사업비)

- ✓ **(교육연구단운영비(인건비))교육연구단(팀) 전담 행정인력을 풀타임 고용이 아닌 시간제(파트타임)로 고용이 가능한지?**



Q7

교육연구단(팀) 전담 행정인력의 경우 시간제(파트타임)로 채용 가능하며, 교육연구단운영비의 인건비에서 집행 가능(단, 계약서상에 BK사업단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산학협력단 소속인 직원을 겸직으로 활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 집행 사례에 해당되니 유의 바람)

※ 근로계약서 및 활용계획 관련 서류 필요(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해당 인력 실무자 등록 필수)

- ✓ **(교육연구단운영비(성과급))2차년도에 산출된 성과를 기준으로 기여도 평가를 하여 3차년도에 성과급으로 지급가능한지? 2차년도에는 참여했으나 3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Q8

참여교수가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면 전년도 실적에 대해 당해연도에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 가능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의 대상은 당해연도 참여인력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참여했으나 당해연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성과급 지급 불가. 지급대상이 당해연도 참여교수라면 실적산정의 기간은 교육연구단 자체규정 기준에 따라 설정 가능

3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교육연구단(팀) 사업비)



✓ (교육연구단운영비(국내여비))제주도에서 7월 2일 ~7월 5일에 개최하는 학회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첫날 일정이 오전 9시부터 시작이라 전날인 7월 1일에 출발하고자 하는데 해당하는 여비 지원이 가능한지?

학회 일정상 당일 출발 및 도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시: 당일 오전 9시 학회일정 시작으로 전날 출발이 불가피한 경우) 공식일정 앞/뒤로 1일씩 추가 여비 지원 가능(관련 사유서 구비)



✓ (교육연구단운영비(학술활동지원비))연구수행 관련 동일 도서를 여러 권 구입 가능한지?

과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도서 여러 권을 구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나, 배포목적이 아닌 연구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술활동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하며, 대학에서 도서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대학에 귀속(단, 동일 도서를 여러 권 구입하여 단순 배포 시 추후 불인정될 수 있음)

3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교육연구단(팀) 사업비)



✓ (교육연구단운영비(일반수용비))학과 특성상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 수행 시 노트북거치대, 키보드, 대용량USB, 외장하드를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사무용품으로 구입 가능한지?

노트북거치대, 키보드, 대용량USB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가능하나, 외장하드의 경우 범용성 장비(내구연수 1년이상)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사무용품으로 인정 불가

연구수행의 직접적인 재료(분해, 분석 등)로 활용될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하나, 그 외 외장하드 본래 기능 그 자체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직접비에서 집행 불가



✓ (교육연구단운영비(기타경비))교육연구단 내 행사 시 재학기간 중 우수한 논문, 학업성적 등을 소지한 학생에게 포상금 또는 상품 지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행사 개최 시 일회성 포상(상품,상금) 등은 교육연구단운영비의 기타경비 항목에서 집행 가능하며, 반드시 자체운영규정의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함(금액의 상한액, 상품 지급 가능여부 모두 규정에 명시해야 하며,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품 구입비 등의 집행은 불가함)

4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대학원혁신 사업비)



✓ **(국제화경비)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시 본교 소속 연구원이 아닌, 타 기관 소속 외부연구원에게 출장비 지원이 가능한지?**

본교 소속이 아닌 타기관 소속 연구원에게는 출장비 지원 불가
 R&D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원(참여인력) 개념이 있어 타 기관 소속 연구원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경우 출장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원혁신지원비는 참여연구원 개념이 없고 해당 대학의 소속인력에 한하여 관련 경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지원 불가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 관련 행사 개최 시 경품 비용을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서 집행 가능한지?**

집행기준 제29조(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관련, 대학원혁신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내부심사를 거쳐 선발 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그 외 기타 대학원 혁신과 관련된 프로젝트 포상인 경우 기타사업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포상 종류는 대학자체규정 준용)
 ※단, BK21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이거나 사업 목적과 무관한 행사비(포상), BK21 사업 미참여 학과(부)에 직접 지원,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집행 제한

4 Q&A 주요 공통질의 사항(대학원혁신 사업비)



Q3

✓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대학원생 인권침해 상담 기능 고도화를 위해 인권센터 상담 공간 개선을 위한 비용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에서 집행 가능한지?

대학원생이 이용하는 인권센터 상담공간 개선비용 교육·연구 환경개선비에서 집행 가능

단,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활용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 완료 필요



Q4

✓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자재 납품 시기가 확정 되지 않을 경우 기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사고이월(원인행위는 당해연도, 지출행위는 차년도) 처리가 가능한지?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는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완료 되어야 하므로 사고이월 처리 불가

5 중간평가 관련 주요 Q&A



✓ 모든 패널 내 교육연구단(팀)의 하위 30%가 탈락하나요?

중간평가지표 공청회에서 제시한 패널 내 탈락 기준표는 예시이며, 패널별 교육연구단(팀) 수, 타 패널과의 형평성, 패널 내 점수 분포도, 연구단(팀) 별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대표연구업적물을 3건 제출해야 하는 교수님이, 2건만 제출했을 경우 채점방법

제출해야하는 대표연구업적물의 수에 미달하는 업적물에 대해서만 0점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3편을 제출해야하는데, 2편을 제출한다면 2편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미제출 1건은 0점입니다

5 중간평가 관련 주요 Q&A



✓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관련

제시된 9개 분야 중에서 선택에 따른 가중치나 중요도는 없습니다
실적의 내용과 질로 평가합니다



✓ 총 참여대학원생 수 산정기준 (총 참여대학원생 수 정의)

평가기간 내 4단계 BK21 사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실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기별로 참여한 대학원생 합계 10%로 계상됩니다

5 중간평가 관련 주요 Q&A



✓ 국제 공동논문의 경우, 정량적인 가중치가 있나요?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별도의 가중치는 없습니다.
동료 평가(peer review)에 의해 업적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